24년도 「글로벌 협력R&D 기획 프로그램」 참여기업 모집공고[기간연장]

국내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『글로벌 협력R&D 기획 프로그램 (MIT ILP)』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공고기간 변경 사항(연장)

당초	변경	
2024.10.25.(금) ~ 2024.11.08.(금)	2024.10.25.(금) ~ 2024.11.20.(수)	

2024년 11월 8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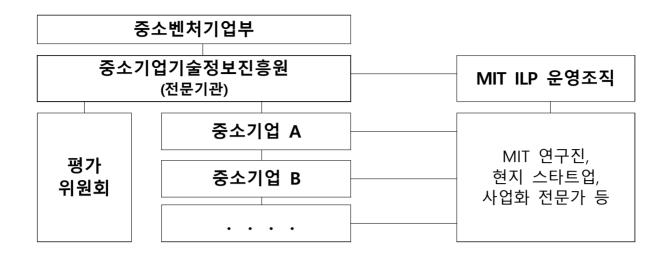
1 | 3

프로그램 개요

가. 프로그램 목적

-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미국 MIT(매사추세츠공대)와의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, 공동 R&D 및 해외 시장 진출 등을 위한 기획 프로그램 지원
- MIT 연구자와 단독으로 네트워크 구축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전문기관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)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
 - < MIT ILP(Industrial Liaison Program) 개요 >
- ◆ (목적) MIT의 학문적 연구성과를 산업계로 이전하기 위해 창업,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산학연계 프로그램(1948년 시작)
- ◆ (담당조직) MIT 산학협력단 내 대외협력부서에서 운영, 참여기업별 전담 PD(Program Director)가 배정되어 추진사항 등 관리
 - * 웹 주소 : http://ilp.mit.edu
 - * 소재지: 1 Mail street 12th floor, E90-1201, Cambridge, MA 02142
- ◆ (주요 활동) MIT 연구자와 공동 R&D 추진을 위한 기술상담, MIT 연구자 및 미국 스타트업 등과 교류 위한 세미나·워크샵·컨퍼런스·박람회 개최
- ◆ (가입현황) 전세계 글로벌 대기업, 공공기관 등 약 527개사 가입(*24년 기준)

나. 추진체계



2 지원 내용

가. 지원기간 및 금액

- (기간) 멤버십 가입 후 1년간 참여
 - * 1년 활동 후 R&D 매칭이 안된 경우 멤버십 기간연장 등은 추가 협의 진행
- (금액) 멤버십 가입비의 75% 지원, 25%는 기업 부담

< ILP 멤버십 1개당 사업비 구성 >

구분	비율	금액	형태
정부 지원	75%	\$71,250 (≒96백만원)	현금
기업 부담	25%	\$23,750 (≒32백만원)	현금
합계	100%	\$95,000 (≒128백만원)	전액 현금

* 환율 변동에 따라 환산금액 변동 가능

나. 지원대상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
 - ※ '붙임2'의 기준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은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
- 기술분야 제한은 없으나 국가전략기술분야 등을 권고

다. MIT ILP 주요 운영 방식

- ① (협력 중개) 전문기관(기정원)이 MIT ILP 운영조직과 협력 창구역할 수행하고 한국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활동 지원
- ② (네트워크 구축지원) 미국 현지 및 국내에서 기술상담회/세미나 /워크샵/심포지엄 등 정기 개최하여 상호 미팅 기회 제공
- ③ (온라인 서비스 제공) ILP 전용 홈페이지 통해 MIT 연구자, 외부 전문가 등의 전문 기술자료 활용 서비스 제공
- **4** (R&D 연계지원) MIT 연구자와 공동R&D 추진 합의 등 활동 우수 기업은 '25년 중소기업 글로벌 협력R&D 사업'으로 연계 지원^{*}
 - * 사업 참여 기본조건을 충족하면 약식 평가 등을 통해 신속하게 R&D 지원
- (인력교류) 현지 진출 중소기업의 연구진 확보 위해 MIT 연구자 /학생 등과 리크루팅 행사 지원
- (사업화 지원) R&D 이후 사업화 희망기업 대상으로 임상, 후속 투자유치 분야의 전문가와 네트워크 구축 지원

3 참여기업 선정

가. 선정기업 수

- ㅇ 3개 내외
 - ※ 로테이션 방식 등을 감안 후보기업도 선정 검토

나. 평가방법

- (요건 검토) 전문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이 제출한 참여계획서에 대해, 참여요건 등을 확인 후 적격기업 목록을 MIT ILP에 안내
 - *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, 재무요건 충족 여부 등

- (서면 검토) MIT ILP는 자체 기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참여 계획서, MIT와의 협력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
- (기업 선정) 전문기관은 기술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하고 MIT ILP 의견서, 참여기업 역량, 활동계획 등을 평가
- 신청기업의 보유기술 수준, 기술협력을 통한 파급효과, 협력 준비 정도 및 가능성, 후속 계획 등을 중점 평가

< 평가지표(안) >

지표(배점)	주요 내용
보유기술 수준 (20점)	- 기술의 혁신성, 기술개발 추진 실적 등
글로벌 협력 역량 (20점)	- 글로벌 협력 경험, 인력 전문성 등
기술협력 계획 (25점)	- 계획의 구체성, 참여 준비도, 공동R&D 계획 등
기술협력 파급효과 (20점)	- 기술경쟁력 제고 효과, 성과 창출 가능성 등
사업화 계획 (15점)	- 사업화 전략 구체성 등

4 추진절차 및 일정

가. 추진절차

프로그램 공고	=	신청·접수	→	요건검토	→	서면검토
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('24.10월중)		중소벤처기업 →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('24.11월초)		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('24.11월 초)		MIT ILP 운영조직 ('24.11월중)
	-					1
활동결과 보고	←	프로그램 활동	←	협약 체결	←	기업 선정
중소벤처기업 →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		중소벤처기업 ('24.12월초)		중소벤처기업 ↔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('24.12월초)	•	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('24.11월중)

*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나. 신청방법

구 분	내 용
공고기간	■ 2024. 10. 25.(금) ~ 11 . 20 .(个)
신청기간	■ 2024. 11. 1.(금) ~ 11. 20.(수) 18:00까지
신청방법	■ 신청방법: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기관정보등록 → 프로그램 공고 → "글로벌 협력R&D 기획 프로그램" 선택 후, 온라인 내용 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
	* 접수마감일 18:00까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절차 진행
	*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다. 제출서류

No	제출서류	비고
1	참여계획서	별첨 서식 이용
2	신용상태 조회·정보 활용 동의서	별첨 서식 이용
3	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별첨 서식 이용
4	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	-
5	중소기업 확인서 *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	-
6	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*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, 단,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 기부등본을 모두 제출	-

다. 문의처(전문기관)

○ 담당부서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글로벌R&D팀

○ 연락번호 : 044-300-0440, 0442

MIT ILP 개요(일반사항)

○ 메사추세츠공과대학 산학협력 프로그램 (Massachusetts Industrial Liaison Program)



○ 프로그램 취지

- MIT의 학문적 연구 성과와 산업계의 상호연계를 지원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, 기업-학계 간 협력과 산업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

○ 주요 목표 및 활동

- 기술 협력 및 이전: MIT의 연구 및 기술 리소스에 접근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 MIT 연구자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MIT의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·서비스 개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
- 기술 세미나 및 워크샵 : 기술 세미나, 워크샵,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여 최신 기술 동향 및 연구 결과 공유
- 기술 전략 및 상담 : 기업의 기술 전략을 지원하고 상담하는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
- 기술 컨퍼런스 및 박람회 : 다양한 기술 분야에 대한 컨퍼런스와 박람회 개최
- 인재 교류 및 양성 : 인턴쉽, 채용 박람회, 특강 등을 통해 기업과 학계 간 인재 교류 촉진과 인재 양성에 기여
- 연구 및 협력 계약 : 기업들과의 협력을 위한 계약 및 프로젝트 관리 지원. 연구 관련 계약과 지식재산권리 등을 지원하여 기술 협력의 원활한 진행 촉진

○ 멤버십 가입절차 및 혜택

- 수시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, 약 1개월의 심사 기간 소요
- 개별 또는 컨소시엄별로 가입 가능하며 가입 형태별 비용이 상이
- 1~2개 기술분야로 한정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며, 최소 가입 기간은 3년으로 함
- 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발굴된 니즈에 맞추어 MIT 교수를 매칭, 매칭된 교수들과 미팅·토론을 통해 공동 프로젝트 추진 지원
- MIT의 연구개발 결과를 컨퍼런스, 세미나, 레포트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제공하며, 매달 컨퍼런스 제공

붙임2

프로그램 신청 및 지원제외 기준

□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

- ☞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·발견되는 경우 평가 또는 지원절차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①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닐 경우
- ②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 - 신청기업,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하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, 성과 실적 입력(장비 구입실적 등), 회수금,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
③ 참여제한 등 해당 여부

- ② 신청기업, 대표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☞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.go.kr) → 과제관리 → 제재정보조회 등
- ① 신청기업, 대표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, 보조금 또는 가접보조금의 교부 제한 중에 있는 경우
 - ☞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을 통한 수행 배제 처분정보 조회

④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

- 신청기업,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⑦ 부도 기업(회생인가 기업은 가능), 휴·폐업 기업
 - ①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,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, 관세 체납, 산재·고용보험 체납, 임금체불 등의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
 - 다만, 아래의 경우는 신청가능
 - * 과제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, 체납처분 유예, 법원의 회생 인가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통해 재창업자금 수혜, 신용보 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통해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 수혜

- ©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금융질서문란,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
 - 다만, 아래의 경우는 신청가능
 - * 과제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 해소, 법원의 회생 인가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통해 재창업자금 수혜, 신용 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통해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 수혜
- @ 파산·회생절차·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- 다만, 아래의 경우는 신청가능
 - *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
- ☞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 - 다만, 아래의 경우는 신청가능
 - * 창업 3년 미만 기업,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에 따른 "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(채권은행협약)"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기업, 시설투자(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·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/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)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·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기업,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기업

< 참고사항 및 관련 문의처 >

- ™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결산재무제표* 및 신용조사 결과로 판단, 전년도 미결산으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 전전년도 결산재무제표로 판단
 - * 재무제표증명원(홈택스), 재무제표확인원(회계법인,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)
- ☞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→ 신용회복위원회(www.ccrs.or.kr, ☎ 1600-5500)
- ☞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(보증) 및 재기지원 보증 →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(www.rechallenge.or.kr, ☎ 055-751-9636) 또는 국번없이 1357
- 『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에 따른 "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(채권은행 협약)"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특별약정 체결 → 주채권은행에 문의
-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 여부 등), 공장/기계장치/시설 등 구입/신축 증빙자료 등
- ☞ 부채비율 계산 시,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「공공기 관의운영에관한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(전환사채 (CB), 신주인수권부사채(BW), 상환전환우선주(RCPS)) 유치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 총액에서 제외 가능